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농산물 조사체계 강화할 터

지난 해에는 일본 원자력발전소 사고 및 EU의 장출혈성 대장균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 다양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안전한 농식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11년 농식품 안전관리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63%가 농산물 소비시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답변하였으며, 이는 '10년 조사시 40%가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답한 것에 반해 크게 증가된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목표로 취약분야 중심으로 농산물 안전성 조사체계를 강화하고, 사전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 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농약관리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생산 및



김승환
농림수산식품부 안전위생과장

올해는 총 76천건의 안전성조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부적합률이 높았던 품목 및 지역 위주로, 직거래 농산물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특별조사 실시 등 취약분야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유통·판매단계 농산물과 농지·용수 등 재배환경에 대하여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안전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폐기·출하연기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에는 지난해 대비 약 4%가량 증가한 총 76천건을 조사할 계획이며 생산단계는 전년도 부적합률이 높았던 품목 및 지역 위주로 조사하고, 유통·판매단계는 직거래 농산물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는 등 취약분야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자 한다. 특히, 일본내 원전사고로 인해 방사능 오염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높은 것을 감안하여 농산물에 대한 방사능 조사를 '11년 대비 3배 이상(11년 400건 → '12년 1,500건)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폐광산, 산업단지, 매립지 등 중금속 오염우려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해당 지역 농경지 및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조사를 강화하고, 농산물 오염이 확인된 경우 전량 폐기하여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 농경지는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휴경 및 토양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 위험평가 작업반 구성

최근 들어 안전기준이 미처 설정되지 않았거나 인체 위해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한 물질로 인해 농식품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외 신종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고 문제되는 유해물질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어 '농식품 위험평가 작업반'을 구성하여 위험요소의 예측 및 조기대응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는 생산, 수확후 관리, 유통의 각 단계에서 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 위험요소를 적절히 관리하도록 하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제도를 '06년부터 도입되어 시행중이다. 현재 3% 수준인 GAP농산물 생산 비중을 '15년까지 1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을 목표로 GAP 활성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협의 공동선별출하조직과 작목반을 GAP 농산물 선도조직으로 육성하고 해당 지역 조합에 산지 유통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어 GAP 생산 조직을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개별 농가단위의 GAP 인증에 따른 농가부담, 관리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생산조직단위의 GAP 집단인증제를 도입하여 GAP 생산 조직은 생산계획 수립, 재배이력관리 등 인증신청을 총괄하고 생산농업인은 생산 및 출하 정보 기록 등을 담당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GAP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모든 품목에 일률

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GAP관리기준(50개)을 식량·과수·채소 등 5개 품목군별로 세분화하여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GAP 인증에 필요한 토양·용수 분석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여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GAP 농산물 생산 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농협 및 대형유통업체가 GAP농산물 판매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판매촉진 홍보비를 지원하고, 학교급식이나 군납 등에 농산물을 대량 공급할 수 있는 수요처 발굴을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납품기준 개선 등을 추진할 것이다.

안전관리 제도정비 안전성 정책 한층 탄력

농약관리법을 개정('12.1.26일 시행)하여 농약의 통신판매금지, 부정 농약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새로이 도입하는 등 농약안전관리 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농약을 판매하려는 자는 판매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판매관리인으로 하여금 농약에 대한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 농약관리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유통판매과정에서의 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농식품 공급을 위하여 농약 등 자재에서부터 생산, 유통과정을 아우르는 다양한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2년 한해동안 관련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여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로 이어져 농업인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㉞